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36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이종배·김재섭·김용태

김위상 · 송석준 · 이만희

이종욱 · 김성원 · 김소희

성일종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원이 출산휴가 · 육아휴직 을 하는 경우 그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 한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4조의36(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① 내국 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내국인이 다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려는내국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액공제를신청하여야한다.